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5
------	-----

2011. 7. .
재 정 경 제 위 원 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6.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조례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자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 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운영현황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오고 있음.
- 시는 2012년까지 모두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2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1년 5월 현재 총 5차례의 모집을 통해 새터민 생활안정, 다문화가정 도우미, 방과후 학교 강사, 집수리 사업 등의 분야에서 377개 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음.

〈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실적

(단위: 개)

구 분	합계	사회·복지	문화·교육	보건·보육	환경 등
합계	377	134	123	53	67
1차 지정('10.2월)	110	58	28	18	6
2차 지정('10.5월)	85	26	25	16	18
3차 지정('10.9월)	57	14	22	7	14
4차 지정('11.2월)	57	21	22	5	9
5차 지정('11.5월)	68	15	26	7	20

-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서울시는 1인당 월98만원(50인 이내, 전문직원 1인 월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 자금지원¹⁾, 경영컨설팅 지원²⁾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1) 사회적기업특별자금 5억원 이내(연 2~3%), 시설자금 50억원 이내(연 4%)

다.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 기업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안 제6조의2 신설)

- 안 제6조의2는 기존의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과 별도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형 사회적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이나, 근로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과 근로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접지원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조정(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현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각종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의 구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최근에는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음³⁾.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지침」(2010. 10. 11)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남설방지와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장 및 위원 직급의 적정화를 통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에는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10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원장(공동 위원장 포함)이 시장으로 명시된 경우가 15개, 행정1부시장인 경우는 20개, 행정2부시장인 경우는 4개임.

2) 연 216만원이내(기업당 12회, 1회당 180천원)

3)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에 따라 정부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음.

-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현재 행정1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급을 사회적기업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조정하는 조치는 의미있는 조치로 판단됨.
-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정 과정 등에 신청 기업의 업무에 따라 경제진흥본부외에도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 직급의 조정 이후에도 관련 실·국·본부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조정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의견

- 사회적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운영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이나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중앙정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기업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위원회 운영 효율화 외에도 관련 실·국·본부와의 효율적인 조정 가능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 김인호 위원 : 위원장의 조정에 따라 기타 위촉위원들의 조정도 예상되는데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나?
- 신면호 본부장 : 실무중심으로 구성되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위촉위원들의 조정 요구는 수용할 의사가 있음.
- 강희용 위원 : 2년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60%로 정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 신면호 본부장 : 자생력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강희용 위원 : 교육훈련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 생각인가?
- 신면호 본부장 :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임.

4)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3차례, 2011년 1차례 등 모두 4차례 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제1부시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행정제1부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 ⑦ (생략)</p>	<p>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경제진흥본부장</u>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u>은 <u>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